

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상품권의 종류 및 기재사항 추가(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)

다.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8조)

라.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(안 제10조, 제1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상공인”을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유가증권을”을 “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시장과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”로,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·제4호”를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”로, “전자금융업자”를 “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상품권”을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미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명칭

2. 권면금액
3. 발행권자
4. 발행일 및 발행번호
5. 유효기간
6. 환불기준
7.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시장”을 “매월 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생략할 수 있다”를 “제출한 것으로 본다”로 한다.

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협약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가맹점으로”를 “시장은 영업장이 구미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
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2.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
④ 그 밖에 구미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”를 “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소상공인</u>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소상공인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사	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사	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사
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	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	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	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	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
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	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	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	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	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
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	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	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	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	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
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사랑	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사랑	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상공인-	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상공인-	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상공인-
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	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	-----	-----	-----
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-----	-----	-----
한다.	한다.	---	---	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-----	제2조(정의) -----	제2조(정의) -----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-----.	-----.	-----.
1. “구미사랑 상품권”이란 그 명	1. “구미사랑 상품권”이란 그 명	1. -----	1. -----	1. -----
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구	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구	-----	-----	-----
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	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	-----	-----	-----
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	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	-----	-----	-----
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	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	-----	-----	-----
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	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	-----	-----	-----
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-----	-----	-----
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,	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,	-----	-----	-----
그 소지자가 구미시 또는 가	그 소지자가 구미시 또는 가	-----	-----	-----
맹점(이하 “상품권 발행자 등”	맹점(이하 “상품권 발행자 등”	-----	-----	-----
이라 한다)에 이를 제시, 교부	이라 한다)에 이를 제시, 교부	-----	-----	-----
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	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	-----	-----	-----
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	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	-----	-----	-----
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	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	-----	-----	-----

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
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
말한다.

2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구미사랑
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
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「전자
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·제
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
금융업자를 말한다.

3.·4. (생략)
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 (생
략)

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
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
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----- 유가증권,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
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
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
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-
--.

2. -----이란 시장과 제6
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
하여 ----- 「전자
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-----
----- 같은
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
자-----.

3.·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 (현
행과 같음)

③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
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
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라 상
품권의 종류는 지류형, 카드형
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
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상품권-
---. 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④ 구미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

④ (생략)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등) ①

· ② (생략)

<신설>

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, 판매, 회수,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은 다음과 같다.

1. 명칭

2. 권면금액

3. 발행권자

4. 발행일 및 발행번호

5. 유효기간

6. 환불기준

7.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등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협약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.

④ -----

----- 매월 시장-----

-----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④ (생 략)

제8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 제1호의 “사행산업”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“불법사행산업”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

③ · ④ (생 략)

제10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· ② (생 략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8조(가맹점의 등록) ① 시장은 영업장이 구미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-----.

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
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
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<u>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그 밖에 구미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제12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·② (생 략)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<u>이윤을 남기 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	③ <u>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1. <u>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 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u> 2. <u>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u> ④ <u>그 밖에 구미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.</u> 제12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-----.</u>
---	--

관계법령

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사랑상품권”이란 지역상품권,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(이하 “상품권발행자등”이라 한다)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.
2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
3. 생략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~ ③ 생략

-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,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0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~ ② 생략

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2.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
제11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김 차 병
	담 당	김 태 식
	담 당 자	박 아 름 (480-2633)